

페이지	2018년	2019년
3	<p>2. 공중보건역사의 배치</p> <p>가. 배치 기준</p> <p>1) 보건소 및 보건지소</p> <p>가) 대상지역</p> <p>(1)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우선배치)</p> <p>(2) 시(특별시, 광역시 제외) 보건소 및 시 보건지소</p> <p>※ 경기도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고양·과천·구리·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시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p> <p>※ 인구 5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남양주·안산·용인·화성·김해·창원·포항·전주·천안·청주시)는 의과 배치를 제외하되, 치과 및 한의과의 경우 <u>2018년</u>에 한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각 1인 이내 재량 배치 할 수 있다.</p> <p><신 설></p> <p>(3) 광역시의 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p> <p>※ 공중보건역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17년부터 단계적 감축</p>	<p>2. 공중보건역사의 배치</p> <p>가. 배치 기준</p> <p>1) 보건소 및 보건지소</p> <p>가) 대상지역</p> <p>(1)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우선배치)</p> <p>(2) 시(특별시, 광역시 제외) 보건소 및 시 보건지소</p> <p>※ 경기도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고양·과천·구리·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시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p> <p>※ 인구 5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남양주·안산·용인·화성·김해·창원·포항·전주·천안·청주시)는 의과 배치를 제외하되, 치과 및 한의과의 경우 <u>2019년</u>에 한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각 1인 이내 재량 배치 할 수 있다.</p> <p>※ <u>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는 의과 배치를 제외하되, 2019년에 한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1인 이내 재량 배치 할 수 있다.</u></p> <p>(3) 광역시의 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p> <p>※ 공중보건역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17년부터 단계적 감축</p>
4	<p>나) 배치기관 및 인원</p> <p>(주석)</p> <p>1)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함(행정자치부, '17.12.31.현재)</p> <p>(주석)</p> <p>2) <u>2018년</u>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안내(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p> <p>(2) 보건소</p> <p>① 군(郡) 지역 보건소에는 의과 2인 이내 배치하되, 광역시 군 소재 보건소는 의과 1인 이내 배치</p> <p>※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군위군·영암군·서천군·의성군 보건소는 3인 이내 배치한다.</p>	<p>나) 배치기관 및 인원</p> <p>(주석)</p> <p>1)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함(행정안전부, '18.12.31.현재)</p> <p>(주석)</p> <p>2) <u>2019년</u>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안내(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p> <p>(2) 보건소</p> <p>① 군(郡) 지역 보건소에는 의과 2인 이내 배치하되, 광역시 군 소재 보건소는 의과 1인 이내 배치</p> <p>※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군위군·영암군·<u>하동군</u>·의성군 보건소는 3인 이내 배치한다.</p>

	<p>② 시(市) 지역 보건소에는 의과 2인 이내 배치하되, <u>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u> 시 소재 보건소는 1인 이내 배치</p> <p>※ 도서지역 순회진료팀을 운영하는 군산시 보건소는 <u>3인</u> 이내 배치한다.</p>	<p>② 시(市) 지역 보건소에는 의과 2인 이내 배치하되, <u>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u> 시 소재 보건소는 1인 이내 배치</p> <p>※ 도서지역 순회진료팀을 운영하는 군산시 보건소는 <u>2인</u> 이내 배치한다.</p>																																
6	<p>※ 응급실 운영을 하는 전남 신안군 암태보건지소, 하의보건지소, 전남 완도군 노화보건지소, 전남 진도군 조도보건지소의 경우 <u>의과 3인</u> 이내 배치한다.</p> <p>※ 농어촌의료법 제8조2항에 따른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 보건지소는 다음 표와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212 422 1153 1053"> <tr> <td rowspan="7">연륙되지 않은 도서 지역</td> <td>인천</td> <td>강화군 서도면·불음보건지소 옹진군 대청·덕적·백령·북도·연평·자월·장봉보건지소</td> </tr> <tr> <td>전북</td> <td>군산시 개야도·어청도보건지소 부안군 위도보건지소</td> </tr> <tr> <td>전남</td> <td>신안군 가거도·도초·비금·신의·<u>안좌·암태·입자·자은·장산·팔금</u>·하의·홍도·<u>흑산보건지소</u> 여수시 개도·남면·삼산·연도·초도보건지소 영광군 낙월보건지소 완도군 금당·금일·노화·보길·생일·소안·청산·넙도보건지소 진도군 조도보건지소</td> </tr> <tr> <td>경북</td> <td>울릉군 북면·서면보건지소</td> </tr> <tr> <td>경남</td> <td>통영시 사랑·육지·한산보건지소</td> </tr> <tr> <td>제주</td> <td>제주시 우도·추자보건지소</td> </tr> <tr> <td colspan="3">기타 의료취약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근무지역 이탈금지지역</td> </tr> </table> <p>(이하 생략)</p>	연륙되지 않은 도서 지역	인천	강화군 서도면·불음보건지소 옹진군 대청·덕적·백령·북도·연평·자월·장봉보건지소	전북	군산시 개야도·어청도보건지소 부안군 위도보건지소	전남	신안군 가거도·도초·비금·신의· <u>안좌·암태·입자·자은·장산·팔금</u> ·하의·홍도· <u>흑산보건지소</u> 여수시 개도·남면·삼산·연도·초도보건지소 영광군 낙월보건지소 완도군 금당·금일·노화·보길·생일·소안·청산·넙도보건지소 진도군 조도보건지소	경북	울릉군 북면·서면보건지소	경남	통영시 사랑·육지·한산보건지소	제주	제주시 우도·추자보건지소	기타 의료취약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근무지역 이탈금지지역			<p>※ 응급실 운영을 하는 전남 신안군 암태보건지소, 하의보건지소, 전남 완도군 노화보건지소, 전남 진도군 조도보건지소의 경우 <u>의과 1인</u> 이내 추가 배치한다.</p> <p>※ 농어촌의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 보건지소는 다음 표와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1198 422 2139 1053"> <tr> <td rowspan="7">연륙되지 않은 도서 지역</td> <td>인천</td> <td>강화군 서도면·불음보건지소 옹진군 대청·덕적·백령·북도·연평·자월·장봉보건지소</td> </tr> <tr> <td>전북</td> <td>군산시 개야도·어청도보건지소 부안군 위도보건지소</td> </tr> <tr> <td>전남</td> <td>신안군 가거도·도초·비금·신의·입자·장산·하의·홍도·<u>흑산보건지소</u> 여수시 개도·남면·삼산·연도·초도보건지소 영광군 낙월보건지소 완도군 금당·금일·노화·보길·생일·소안·청산·넙도보건지소 진도군 조도보건지소</td> </tr> <tr> <td>경북</td> <td>울릉군 북면·서면보건지소</td> </tr> <tr> <td>경남</td> <td>통영시 사랑·육지·한산보건지소</td> </tr> <tr> <td>제주</td> <td>제주시 우도·추자보건지소</td> </tr> <tr> <td colspan="3">기타 의료취약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근무지역 이탈금지지역</td> </tr> </table> <p>(현행과 동일)</p>	연륙되지 않은 도서 지역	인천	강화군 서도면·불음보건지소 옹진군 대청·덕적·백령·북도·연평·자월·장봉보건지소	전북	군산시 개야도·어청도보건지소 부안군 위도보건지소	전남	신안군 가거도·도초·비금·신의·입자·장산·하의·홍도· <u>흑산보건지소</u> 여수시 개도·남면·삼산·연도·초도보건지소 영광군 낙월보건지소 완도군 금당·금일·노화·보길·생일·소안·청산·넙도보건지소 진도군 조도보건지소	경북	울릉군 북면·서면보건지소	경남	통영시 사랑·육지·한산보건지소	제주	제주시 우도·추자보건지소	기타 의료취약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근무지역 이탈금지지역		
연륙되지 않은 도서 지역	인천		강화군 서도면·불음보건지소 옹진군 대청·덕적·백령·북도·연평·자월·장봉보건지소																															
	전북		군산시 개야도·어청도보건지소 부안군 위도보건지소																															
	전남		신안군 가거도·도초·비금·신의· <u>안좌·암태·입자·자은·장산·팔금</u> ·하의·홍도· <u>흑산보건지소</u> 여수시 개도·남면·삼산·연도·초도보건지소 영광군 낙월보건지소 완도군 금당·금일·노화·보길·생일·소안·청산·넙도보건지소 진도군 조도보건지소																															
	경북		울릉군 북면·서면보건지소																															
	경남		통영시 사랑·육지·한산보건지소																															
	제주		제주시 우도·추자보건지소																															
	기타 의료취약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근무지역 이탈금지지역																																	
연륙되지 않은 도서 지역	인천	강화군 서도면·불음보건지소 옹진군 대청·덕적·백령·북도·연평·자월·장봉보건지소																																
	전북	군산시 개야도·어청도보건지소 부안군 위도보건지소																																
	전남	신안군 가거도·도초·비금·신의·입자·장산·하의·홍도· <u>흑산보건지소</u> 여수시 개도·남면·삼산·연도·초도보건지소 영광군 낙월보건지소 완도군 금당·금일·노화·보길·생일·소안·청산·넙도보건지소 진도군 조도보건지소																																
	경북	울릉군 북면·서면보건지소																																
	경남	통영시 사랑·육지·한산보건지소																																
	제주	제주시 우도·추자보건지소																																
	기타 의료취약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근무지역 이탈금지지역																																	
7	<p>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p> <p>가) ~ 나) (생략)</p> <p>다) 배치인원</p> <p>(1) (생략)</p> <p>(2)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p> <p>① (생략)</p>	<p>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p> <p>가) ~ 나) (현행과 동일)</p> <p>다) 배치인원</p> <p>(1) (현행과 동일)</p> <p>(2)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시 소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5만 미만 시 소재 기관(삼척, 속초, 통영, 김천, 상주, 남원, <u>공주시</u>) : 의과 5인 이내 배치 (이하 생략) <p><u><신 설></u></p> <p>(3) (생 략)</p> <p>(4) <u>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u> : 한의과 1인 이내 배치</p> <p>※ <u>인구 50만 이상 시 소재 기관은 배치 제외. 다만, '18년에 한하여 1인 이내 지자체 재량배치 가능</u></p> <p><u><신 설></u></p> <p>※ 다른 사유로 공중보건의사가 1명이상 배치된 경우, 한의과 배치 제외</p> <p>3) (생 략)</p> <p>4) <u>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u></p> <p>가) 배치기관 : 한국한센복지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 한약진흥재단</p> <p>나) 배치인원</p> <p>(1) <u>한국한센복지협회</u> : 의과 1인이내 배치</p> <p>※ <u>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에 따라 만료지에 대하여 '18년 한시 배치</u></p> <p>(2) <u>각 시·도 소방본부</u> : 배치제외</p> <p>(3) <u>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단, 한약진흥재단은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에 따라 필요 인원 배치</u></p> <p>※ <u>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축소 또는 제외 계획</u></p>	<p>② 시 소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5만 미만 시 소재 기관(삼척, 속초, 통영, 김천, 상주, 남원, <u>공주, 영주</u>) : 의과 5인 이내 배치 (현행과 동일) <p>※ <u>지역내 수요 등 고려하여 불가피할 경우 지방의료원에 치과 1인 이내 재량 배치 가능(다만,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 우선적으로 배치한 이후 최소 범위내에서 배치 가능)</u></p> <p>(3) (현행과 동일)</p> <p>(4) <u>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및 통합의료한방병원</u> : 한의과 1인 이내 배치</p> <p>※ <u>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 소재 기관은 배치 제외. 다만, '19년에 한하여 1인 이내 지자체 재량배치 가능</u></p> <p>※ <u>통합의료한방병원의 경우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기관은 배치 제외하며, 배치기관도 공중보건의사 수급 상황에 따라 한시 배치</u></p> <p>※ 다른 사유로 공중보건의사가 1명이상 배치된 경우, 한의과 배치 제외</p> <p>3) (현행과 동일)</p> <p>4) <u>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u></p> <p>가) 배치기관 : 한국한센복지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 한약진흥재단</p> <p>나) 배치인원</p> <p>(1) <u>한국한센복지협회</u> : 의과 1인이내 배치</p> <p>※ <u>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에 따라 만료지에 대하여 '19년 한시 배치</u></p> <p><u><삭 제></u></p> <p>(2) <u>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단, 한약진흥재단은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에 따라 필요 인원 배치</u></p> <p>※ <u>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축소 또는 제외 계획</u></p>
--	--

9~11

(4) 이외의 기관은 신규 배치하지 않는다.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 공중보건직의 배치에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

가) ~ 나) (생략)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 배치기관 : 노숙인무료진료시설

(2) 배치인원 : 배치제외. 다만, 공중보건직의 수급상황에 따라 '18년 한시 배치

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내의 의료시설

(1) 배치기관 : 교정시설

(2) 배치인원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 기관 당 의과 및 치과, 한의과 각 1인 이내 배치

※ 공중보건직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5년부터 단계적 축소 배치

※ 기관의 인원 내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요에 따라 배치

<신 설>

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기관

(1) 대상지역 :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은 대상으로 한다.

(2) 배치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대학병원은 제외, 이하 '응급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응급의료취약지(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에서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고 24시간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병원(이하 '당직의료기관'이라 한다)

(3) 이외의 기관은 신규 배치하지 않는다.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 공중보건직의 배치에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 배치기관 : 노숙인무료진료시설

(2) 배치인원 : 배치제외. 다만, 공중보건직의 수급상황에 따라 '19년 한시 배치

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내의 의료시설 등

(1) 배치기관 : 교정시설, 치료감호소

(2) 배치인원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 기관 당 의과 및 치과, 한의과 각 1인 이내 배치

※ 공중보건직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단계적 축소 배치

※ 기관의 인원 내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요에 따라 배치

②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소 : 기관 당 치과, 한의과 각 1인 이내 배치

※ 공중보건직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 배치

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기관

(1) 대상지역 :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은 대상으로 한다.

(2) 배치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대학병원은 제외, 이하 '응급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응급의료취약지(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에서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고 24시간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병원(이하 '당직의료기관'이라 한다)

(3) 배치인원

①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

-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⁴⁾에는 시·군별 인구수에 따라 의과 1~2명을 배정하고, 시장·군수는 지역 내 응급의료 기관에 기관 당 의과 1~2인 이내 배치

※ 배정된 인원을 시·군에서 배치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응급 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이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배치 불가

㉗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인구 6만이상) : 의과 1인

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인구 6만미만) : 의과 2인

㉙ 당직의료기관이 지정된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인구 3만이상) : 의과 1인

※ 다만, '17.12월말 현재 인구 3만이상 4만미만인 시군구의 경우 '18년에 한하여 1인 이내 추가로 지자체 재량배치 가능

㉚ 당직의료기관이 지정된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인구 3만미만) : 의과 2인

※ 인구기준(現 6만·3만)은 '19년 이후에도 공중보건 의사 수급 감소에 따라 하향될 수 있음

(주석)

4)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0호, 2017.12.27., 일부개정)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고시(경과규정) 제2조에 의해 응급의료취약지로 유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2018년에 한하여 한시 배정 가능하다.

- 다만, 취약지('18년 신규 취약지 및 한시배정 지역 제외)내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수가 배정된 공중보건 의사 수를 초과하는 경우, '18년에 한하여 초과하는 인원만큼 지자체 재량 배치 할 수 있다.

②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2개 이상 분포된 지역은 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 포함)간 거리가 반경 10km이상일 경우 1인 추가 배정한다(다만, 공중보건 의사 수급상황에 따라 '18년 한시 배치).

(3) 배치인원

①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

-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⁴⁾에는 시·군별 인구수에 따라 의과 1~2명을 배정하고, 시장·군수는 지역 내 응급의료 기관에 기관 당 의과 1~2인 이내 배치

※ 배정된 인원을 시·군에서 배치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응급 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이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배치 불가

㉗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인구 6만이상) : 의과 1인

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인구 6만미만) : 의과 2인

㉙ 당직의료기관이 지정된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인구 3만이상) : 의과 1인

※ 다만, '18.12월말 현재 인구 3만이상 4만미만인 시군구의 경우 '19년에 한하여 1인 이내 추가로 지자체 재량배치 가능

㉚ 당직의료기관이 지정된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인구 3만미만) : 의과 2인

※ 인구기준(現 6만·3만)은 '20년 이후에 공중보건 의사 수급 감소에 따라 하향될 수 있음

(주석)

4)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0호, 2017.12.27., 일부개정), 부칙 경과규정 제2조에 의해 응급의료취약지로 유지하던 지역은 2018.12.31. 부로 경과 규정 만료로 배치 제외

<삭 제>

- 다만, 취약지('19년 신규 취약지 및 한시배정 지역 제외)내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수가 배정된 공중보건 의사 수를 초과하는 경우, '19년에 한하여 초과하는 인원만큼 지자체 재량 배치 할 수 있다.

②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2개 이상 분포된 지역은 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 포함)간 거리가 반경 10km이상일 경우 1인 추가 배정한다(다만, 공중보건 의사 수급상황에 따라 '19년 한시 배치).

11~12	<p>③ ~ ⑦ (생략)</p> <p>바)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역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p> <p>(1) 배치기관 :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관, 국립보건연구원), 시·도 역학조사관, 국립검역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p> <p>(2) 배치인원</p> <p>①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관, 국립보건연구원) : 의과 4인 이내, 치과 2인 이내 배치</p> <p>※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등은 한시적으로 배치한다(자체인력 지속 충원 필요하며 단계적 감축 예정. 필요시 '19년부터 배치 제외 가능).</p> <p>② 시·도 역학조사관 : 시·도 당 의과 1인 이내 배치. 다만, 경기도 역학조사관은 의과 2인 이내 배치한다.</p> <p>※ 시·도 정규직 역학조사관의 채용 시, 동 지침에 의한 타 배치기관으로 재량 배치 가능</p> <p>※ 시·도 역학조사관은 한시적으로 배치한다(자체인력 지속 충원 필요하며 단계적 감축 예정. 필요시 '19년부터 배치 제외 가능).</p> <p>③ ~ ④ (생략)</p>	<p>③ ~ ⑦ (현행과 동일)</p> <p>바)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역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p> <p>(1) 배치기관 :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관, 국립보건연구원), 시·도 역학조사관, 국립검역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p> <p>(2) 배치인원</p> <p>①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관, 국립보건연구원) : 의과 3인 이내, 치과 4인 이내 배치</p> <p>※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등은 한시적으로 배치한다(자체인력 지속 충원 필요하며 단계적 감축 예정. 필요시 '20년부터 배치 제외 가능).</p> <p>② 시·도 역학조사관 : 시·도 당 의과 1인 이내 배치. 다만, 경기도 역학조사관은 의과 2인 이내 배치한다.</p> <p>※ 시·도 정규직 역학조사관의 채용 시, 동 지침에 의한 타 배치기관으로 재량 배치 가능</p> <p>※ 시·도 역학조사관은 한시적으로 배치한다(자체인력 지속 충원 필요하며 단계적 감축 예정. 필요시 '20년부터 배치 제외 가능).</p> <p>③ ~ ④ (현행과 동일)</p>
17	<p>3. 근무지의 변경</p> <p>가. ~ 나. (생략)</p> <p>다. 시도중앙배치기관을 달리하여 변경하는 경우</p> <p>(1) (중략)</p> <p>※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는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한 기간 중 3개월까지는 배치기관 근무기간에 산입</p> <p>- 인천광역시 : 옹진군의 백령면·덕적면·자월면·대청면·연평면·북도면(북도, 장봉도), 강화군의 서도면</p> <p>- 전라북도 : 군산시 어청도·개야도, 부안군 위도</p>	<p>3. 근무지의 변경</p> <p>가. ~ 나. (현행과 동일)</p> <p>다. 시도중앙배치기관을 달리하여 변경하는 경우</p> <p>(1) (현행과 동일)</p> <p>※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는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한 기간 중 3개월까지는 배치기관 근무기간에 산입</p> <p>- 인천광역시 : 옹진군의 백령면·덕적면·자월면·대청면·연평면·북도면(북도, 장봉도), 강화군의 서도면</p> <p>- 전라북도 : 군산시 어청도·개야도, 부안군 위도</p>

	<p>- 전라남도 : 영광군의 낙월면, 신안군의 <u>자은면·하의면·신의면·암태면</u>·흑산면(흑산도, 가거도, 홍도)·도초면·<u>비금면·팔금면·안좌면</u>·장산면·임자면, 완도군의 금일읍·노화읍·금당면·청산면·생일면·보길면·소안면, 여수시의 삼산면(거문도, 초도)·남면(금오도, 연도)·화정면(개도), 진도군의 조도면</p> <p>- 경상북도 : 울릉군</p> <p>- 경상남도 : 통영시 한산면, 사랑면, 육지면</p> <p>-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의 추자면, 우도면</p> <p>(이하 생략)</p>	<p>- 전라남도 : 영광군의 낙월면, 신안군의 <u>하의면·신의면</u>·흑산면(흑산도, 가거도, 홍도)·도초면·<u>비금면</u>·장산면·임자면, 완도군의 금일읍·노화읍·금당면·청산면·생일면·보길면·소안면, 여수시의 삼산면(거문도, 초도)·남면(금오도, 연도)·화정면(개도), 진도군의 조도면</p> <p>- 경상북도 : 울릉군</p> <p>- 경상남도 : 통영시 한산면, 사랑면, 육지면</p> <p>-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의 추자면, 우도면</p> <p>(현행과 동일)</p>
30	<p>6. 공중보건역사의 보수 가. ~ 나. (생략) 다. 보수의 세부 지급기준</p>	<p>6. 공중보건역사의 보수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보수의 세부 지급기준</p>

구 분	지 급 액	비 고
<보수>		
1. 봉 급	(생 략)	• 연도별 “공무원보수규정”참조
2. 정근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연수 1년 미만 : 미지급 - 근무연수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 근무연수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 일 지급
3. 진료수당	(생 략)	• 매월지급
4. 가족수당	(생 략)	• 매월지급
<복리후생비>		
1. 명절휴가비	(생 략)	• 추석 및 설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
2. 맞춤형 복지제도		•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기타 수당 및 여비>		
1. 업무활동장려금	(생 략)	•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근무기관에서 지급
2. 초과근무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별표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의 군인 직종 “중위 또는 대위”(농어촌 의료법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에 따름) 적용	• 2018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 대위 12,368원 - 중위 8,210원
3.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생 략)	•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4. 여비	(생 략)	•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신 설>

구 분	지 급 액	비 고
<보수>		
1. 봉 급	(현행과 동일)	• 연도별 “공무원보수규정”참조
2. 정근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연수 1년 미만 : 미지급 - 근무연수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 근무연수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 일 지급
3. 진료수당	(현행과 동일)	• 매월지급
4. 가족수당	(현행과 동일)	• 매월지급
<복리후생비>		
1. 명절휴가비	(현행과 동일)	• 추석 및 설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
2. 맞춤형 복지제도		•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기타 수당 및 여비>		
1. 업무활동장려금	(현행과 동일)	•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근무기관에서 지급
2. 초과근무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별표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의 군인 직종 “중위 또는 대위”(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에 따름) 적용	•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 대위 12,622원 - 중위 9,191원
3.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현행과 동일)	•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4. 여비	(현행과 동일)	•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위 표의 <보수> 2. 정근수당 지급액 기준 중 “근무연수”는 공중보건의로사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며, 연가일수 산정시 적용되는 재직기간과는 별개의 개념임(「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합산된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 즉 공중보건의로로 편입 전 인턴 또는 레지던트 등으로 재직 한 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음)

32 7. 공중보건 의사의 복무
1) 공중보건 의사로서의 기본 의무
(1) 공중보건 의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3년간 공중보건 업무를 성실히 수행

7. 공중보건 의사의 복무
1) 공중보건 의사로서의 기본 의무
(1) 공중보건 의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3년간 공중보건 업무를 성실히 수행

	<p>하여야 한다.</p> <p>※ 공중보건업무의 정의(농어촌의료법 제5조2의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 (이하 생략)</p>	<p>하여야 한다.</p> <p>※ 공중보건업무의 정의(농어촌의료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 (현행과 동일)</p>
37~39	<p>다. 공중보건직의사의 휴가 1) ~ 2) (생략) 3) 연가 (1) 공중보건직의사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p>(이하 표 생략)</p> <p>※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관련법령의 개정 시 이에 따른다.</p> <p>※ 1) 위 비교의 일수 산식을 계산할 때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중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p> <p>2) 연가 기산일은 매년 1.1로 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편입년도와 복무만료년도의 경우 위 비교 산식에 따라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연가일수 계산</p> <p>3) 병가(공무상 병가는 제외)를 사용하였을 경우, <u>근속기간별 연가일수 산정 시 해당 병가 일수를 일수 산식 중 “해당연도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서 빼고 재산출하여야 함</u></p> <p>4) (2018년 경과규정) 등 개정 기준은 2018년도 4월 00일(각 년차별 복무개시일) 부터 12.31. 까지의 연가일수부터 적용하며 해당기간의 연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편입 연기 또는 중도 편입자의 경우 아래와 다를</p>	<p>다. 공중보건직의사의 휴가 1) ~ 2) (현행과 동일) 3) 연가 (1) 공중보건직의사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p>(현행과 동일)</p> <p>※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관련법령의 개정 시 이에 따른다.</p> <p>※ 1) 위 비교의 일수 산식을 계산할 때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중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p> <p>2) 연가 기산일은 매년 1.1로 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편입년도와 복무만료년도의 경우 위 비교 산식에 따라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연가일수 계산</p> <p>3) 병가(공무상 병가는 제외)를 사용하였을 경우, <u>근속기간별 연가일수 산정 시 해당 병가 일수를 일수 산식 중 “해당연도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서 빼고 재산출하여야 함</u></p> <p>-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u>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u> ”연간 통상 병가“를 포함하도록 규정</p> <p>- 따라서, 병가 사용이 발생할 경우 일수산식에서 “<u>해당 연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u>”에서 사용 병가일수를 제외하고 해당 연도 연가일수 재산출 필요(연가일수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병가 사용 시 마다 수시로 연가일수 재산출 요망)</p> <p><삭제></p>

39~40	<p style="text-align: center;"><u>수 있음</u></p> <p>- 2018년 복무개시자(1년차) : 위 표 1년차(복무개시년도)의 비고 일수 산식대로 계산</p> <p>- 2016년(3년차) 또는 2017년(2년차) 복무개시자 : 2018.4월중 복무개시일 ~ 2018.12.31.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한 기간 × 12일(2년차) 또는 14일(3년차) ((위 1)의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p> <p>※ (생략)</p> <p>(2) 당해 연도의 결근이 없는 공중보건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다음해에 한하여 위 (1)항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p> <p style="margin-left: 40px;">① 병가를 얻지 아니한 자</p> <p style="margin-left: 40px;">② 미사용 연가일수가 1일 이상 있는 자</p> <p style="margin-left: 40px;"><u><신 설></u></p> <p>(이하 생략)</p> <p>4) 병 가</p> <p>(1) (생략)</p> <p>(2) <u>연간</u>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u>연간</u>(기산일은 복무 개시일로부터 한다)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현행과 동일)</p> <p>(2) 당해 연도의 결근이 없는 공중보건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다음해에 한하여 위 (1)항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p> <p style="margin-left: 40px;">① 병가를 얻지 아니한 자</p> <p style="margin-left: 40px;">② 미사용 연가일수가 1일 이상 있는 자</p> <p style="margin-left: 40px;">※ <u>연가 가산은 1년 미만 근무한 자(1년차 공중보건의사 해당)에게 적용되지 않음</u> (<u>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u>)</p> <p>(이하 생략)</p> <p>4) 병 가</p> <p>(1) (현행과 동일)</p> <p>(2) <u>연차별</u>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u>연차별</u>(기산일은 복무 개시일로부터 한다)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41	- 10 -	

- ①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②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 ③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3) ~ (5) (생략)

5) 공가

(1)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일 또는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는 근무기관 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① ~ ⑦ (생략)

⑧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학회에 한함)을 이수하고자 할 때(연 2회, 각 2일 이내 인정)

⑨ ~ ⑩ (생략)

⑪ 수련의, 전공의 및 전임의 시험에 응시할 때(2일 이내)

(2) (생략)

6) 특별휴가

(1) ~ (2) (생략)

(3)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①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②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 ③ 연차별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병가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3) ~ (5) (현행과 동일)

5) 공가

(1)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일 또는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는 근무기관 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① ~ ⑦ (현행과 동일)

⑧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학회에 한함)을 이수하고자 할 때(연차별 2회, 각 2일 이내 인정)

⑨ ~ ⑩ (현행과 동일)

⑪ 수련의, 전공의 및 전임의 시험에 응시할 때(복무기간 중 2일 이내)

(2) (현행과 동일)

6) 특별휴가

(1) ~ (2) (현행과 동일)

(3)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연차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42

43~44

58	<p>13. 보 칩</p> <p>1) (생 략)</p> <p>2) 시행일</p> <p>이 지침은 <u>2018년 4월 16일부터</u> 시행한다.</p>	<p>13. 보 칩</p> <p>1) (현행과 동일)</p> <p>2) 시행일</p> <p>이 지침은 <u>2019년 4월 8일부터</u> 시행한다.</p>
----	---	---